

UPDATES 법률정보

퇴직급여제도의 최근 동향

2014년 세법개정안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규 개정

기업의 환경오염사고, 인과관계 입증 없어도 피해배상책임 부담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규제 개선

CASES 업무사례

- 한앤컴퍼니의 한진해운 전용사업부문 취득
- 골드만삭스 PIA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 코스맥스의 지주회사 전환
- 포스코에너지의 동양파워 인수
-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채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계열사에 수수료를 낮춰주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공장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인정한 사례
- 개인생명보험 상품수수료율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성립기준 제시
- 한국가스공사 영구교환사채 발행
- KB제2호스팩 합병
- BNP파리바카디프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지분 인수
- 공공임대주택개발리츠(REITs) 출범
- 프린터 감광드럼의 제조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유럽 차량부품공급기업과 한국 자동차부품사간 합작계약 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NEWS 새소식

- '올해의 한국 로펌상' 포함 총 9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4
-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5)
- 5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5)
- 15개 분야에서 Highly Recommends 선정 - Asialaw Profiles (2015)
-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4)
-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4)
-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3분기 M&A 리그테이블
-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4)

퇴직급여제도의 최근 동향

최근 발표된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관한 정부 시책과,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의 압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방안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퇴직금 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과 맞물려 일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로의 점진적 일원화

정부는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대하여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의제규정은 삭제되고 설립 1년 내 퇴직연금 미도입 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혜택 부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가입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임에 반하여, 정부안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정부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외적립비율을 현재의 70% 수준에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퇴직급여 채권의 압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최근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1/2까지 압류가 허용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판결)

위 하급심 판결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퇴직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1/2까지 압류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향후 상급법원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세 일반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6일자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인세법 제56조)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당기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율(20%~80%)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금액을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직원에 대한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달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1%의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금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당기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기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금융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경정청구 기간의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기간을 현재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8.7%의 단일 소득세율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내에 소재한 지역본부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금융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발생했던 금융사고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가 건실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의 자율성 강화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위하여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 및 감독규정,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추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법령 개정)

- 준법감시인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선임하고 업무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
- 지원부서의 명칭을 상시감시기능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준법감시부로 변경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감독규정 개정)

-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 (필요 시 각 은행 판단 하에 검사부 내 내부통제 인력의 전환배치 유도) 및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

직무상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겸직 관련 (법령 개정)

- 직무상 독립성 강화 (법률상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
- 타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 단, 은행 규모 및 인력운영 실정에 맞춰, 직무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법률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법령 개정)

- 현행 법령상 준법감시인은 ‘주의 요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어 소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어, 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규 개정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단,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인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범위 설정

-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1)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2)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3)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 제공을 허용
- 다만,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기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고객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

- 금융지주가 고객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 금지
 - 고객정보 암호화 후 제공·이용
 -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함(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 승인 받아 이용기간 연장)
 - 제공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
 - 고객정보 요청 또는 제공 시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제공한 회사 및 제공받은 회사, 제공목적 및 항목 등)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할 의무 추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환경

기업의 환경오염사고, 인과관계 입증 없어도 피해배상책임 부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 4월 23일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위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제안한 대안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시설의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책임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기준에 논의되었던 시설에 3개의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및 금번에 추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상 특정 해양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책임대상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해발생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추정은 배제됩니다.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즉 시설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추정을 깨뜨리려면 사업주는 ‘피해발생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무과실책임

환경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상책임한도 설정

사업자는 2천억 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피해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배상책임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의 정보제공·열람 청구권

피해자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에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환경오염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책임대상시설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금번 법률안은 이처럼 시설의 가동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물질의 종류·농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인과관계 추정이 적용의 예외를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 법령상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공정거래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9월 30일 제도의 적합성·필요성 및 기업 부담 완화 관점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규제개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에 관해 2014년 중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2015년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한(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내. 단,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3년 이후에도 조사 개시 가능)만을 들 뿐, 처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 완화(대규모유통업법)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법령을 변경하여 거래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고, 종업원 수는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기업법무

한앤컴퍼니의 한진해운 전용사업부문
취득

2014년 6월 30일 및 2014년 7월 1일 양일에 걸쳐, 한앤컴퍼니는 자신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한앤코해운홀딩스 유한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진해운이 전용선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에이치라인해운 주식회사의 주식 총 78%를 인수하는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선박금융계약의 이전, 외환 관련 법령 및 세무적 처리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인수금융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스맥스의 지주회사 전환

2014년 3월 1일, 화장품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인 코스맥스(주)는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사업회사인 코스맥스(주)를 신설하고 존속회사를 지주회사인 코스맥스BTI(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인 코스맥스BTI는 2014년 7월 18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 진행된 교환공개매수 절차를 통해 사업회사인 코스맥스(주)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코스맥스BTI는 교환공개매수 과정에서 기존의 지주회사 전환사례들과는 달리 할인발행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코스맥스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거래구조 수립, 인허가 취득,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 PIA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2014년 8월 29일, 골드만삭스 PIA(골드만삭스 계열 기관투자자)는 Atinum Partners 및 KB 계열 투자자들과 함께 대성합동지주로부터 대성산업가스의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총액 약 2,384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골드만삭스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동양파워 인수

포스코에너지(주)는 2014년 8월 5일 (주)동양, (주)동양시멘트, (주)동양레저로부터 동양파워(주) 지분 100%를 총액 4,311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포스코에너지(주)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채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최근, '시공사가 PF 건설사업의 대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PF대주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기촉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채권금융기관협회의 의결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PF 건설사업의 대주들인 원고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건설사)를 상대로,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의 워크아웃 절차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 피고의 책임준공의무는 원고들의 PF 대출거래에 대한 중요한 담보로서 보증채무와 유사한 성격이 있고, (2)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3) 결국 원고들의 채권은 채권금융기관협회의 의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많은 건설사가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상황에서, 만약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들은 도산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책임준공의무의 기촉법상 신용공여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면서, 금융·도산·건설·쟁송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촉법 및 책임준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복잡한 쟁점을 간결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인상적인 법정 presentation 등을 통해 치열한 변론을 펼침으로써 여러 분야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계열사에 수수료를 낮춰주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최근 계열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특정 매입계약의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열회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이고, 그로 인해 계열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원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문제가 된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쟁점의 영역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잘 전달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나뉘어 졌는데, 실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무죄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특정 매입계약의 경우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이라는 특수성, 당시 시장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최소 판매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다른 상품의 경우도 적자를 감수하고 고객 유인을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점포 내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아주 낮게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는 점 등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변론을 전개한 결과,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의 경우,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계열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주장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위 사안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는 점을 잘 전달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향후에도 어떠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일반

공장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인정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외부업체에게 공장을 위탁하여 해당 외부업체가 제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우 공장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1) 고도기술이 사용되는 핵심 공정인 설계 공정과 금형 제작 공정이 청구법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점, (2)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목적이 고도기술의 국내 전파라는 점에 있고 본건에서는 설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3) 공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점, (4) 비록 외부 업체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나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있고 제품 또한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를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성립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7월 24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수 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담합이 성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위 사업자들이 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의 존재와 (2)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여러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증권

한국가스공사 영구교환사채 발행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8월 22일, 총액 3,086억 원 규모의 영구교환사채(30년 만기, 발행인 선택에 따라 만기연장)를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영구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한국가스공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률상 규제 저축 가능성, 영구교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 이자·배당 지급과 관련한 정부와의 권한 배분 문제, 타 신종자본증권과의 이자지급 우선순위 설정을 비롯한 보완자본 인정을 위한 발행 조건 검토 등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상 이슈 해결을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KB제2호스팩 합병

KB제2호스팩은 지난 9월 16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암호화 및 인증 전문 보안 업체인 케이사인과의 합병을 승인하였고, 케이사인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KB투자증권을 자문하여, 합병상장 예비심사 청구 관련 요건 및 절차, 거래 관련 일정 및 제반 법률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NP파리바카디프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지분 인수

BNP파리바카디프는 2014년 5월 6일 AXA S.A.로부터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에르고다음”) 지분 85%를 약 1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식매매거래는 2014년 7월 29일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BNP파리바카디프의 에르고다음 지분인수거래와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AXA S.A.와 BNP파리바카디프 양측을 각각 대리하여 에르고다음에 대한 법률실사, 인수계약에 대한 자문 및 협상, 그 밖에 주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공공임대주택개발리츠(REITs) 출범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엔에이치에프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1호 REITs”)와 (주)엔에이치에프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2호 REITs”)가 각 설립되어, 201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REITs 영업인가를 받은 후, 2014년 8월 29일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총 출자액, NHF1호 REITs 1,532억 원, NHF2호 REITs 695억 원)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5,400억 원(NHF1호 REITs) 및 2,150억 원(NHF2호 REITs) 규모의 대출을 조달하였고, 그 중 일부 대출채권은 다시 자산유동화거래를 통해 유동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개발REITs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여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과도해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줄이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최초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본을 유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공임대주택개발REITs의 설립 및 영업인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자산유동화거래, 토지매매계약서 준비 및 건설도급계약서 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공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개발REITs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여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가 완수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프린터 감광드럼의 제조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세계적인 프린터 제조사 C사와 한국의 중소기업의 프린터 소모품 제조사 A사 사이에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감광드럼에 관한 C사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A사는 이러한 특허를 침해하는 감광드럼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C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하여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자로 하여금 침해자의 무효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A사의 매출액에 국세청 고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A사의 이익액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산업분야의 국세청 고시 표준소득율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C사를 대리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리주장을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국제중재·소송

유럽 차량부품공급기업과 한국 자동차부품사간 합작계약 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유럽의 유명 차량부품공급기업을 대리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청구총액이 8천만 달러가 넘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캐나다, 독일, 스위스의 유명 중재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준거법은 한국법, 중재지는 일본 동경이었습니다.

본 건은 국내 굴지의 차량제조업체에 첨단 부품을 제공할 목적의 합작법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는 두 회사 간 50:50 합작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상대방은 합

작회사 운영기간 동안 합작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을 습득한 후 그 기술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 유럽 기업이 고객인 차량제조업체의 요구를 거부하여 거래를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합작계약의 해지 통지 후 ICC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동 유럽 기업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부품을 본인이 직접 차량제조업체에 공급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반소청구를 통하여 합작회사에 제공한 기술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제조업체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합작계약상 경쟁금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9일에 걸쳐 진행된 심리기일에서,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제공한 기술의 가치에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 쟁점에 관하여 입증하는 한편, 합작계약의 준거법인 한국법에 따른 합작계약 상 비밀유지조항, 경쟁금지조항, 합작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조항들의 해석에 관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변론을 외국 중재인들에게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의 법률적 쟁점이 되었던 한국법상 계약해석 문제들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발전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를 외국 중재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상조사의 측면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위 법률적

해석의 근거가 될 유리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유럽 기업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한국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제조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사 관련 전형적인 합작분쟁, 특히 합작계약에 따라 제공된 산업비밀의 보호와 경쟁금지义务的 효력 내지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결제방법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상계 등”의 의미를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트레이딩 시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순차로 거래된 경우 거래당사회사들이 거래 체인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인도를 하지 않고 각자의 구매금액의 차액만을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 1, 2심 법원은 모두 위 거래가 상계 또는 “상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변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형벌법규인 이상 피고

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상계 등”이란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법해석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의해 규율되고 있던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형법의 원칙을 관철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상소식

'올해의 한국 로펌상' 포함 총 9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4

Thomson Reuters 계열의 아시아 지역 법률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회 ALB Korea Law Awards 2014'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2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다 부문 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ALB는 사전 시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판정단 투표를 통해, 한국 우수 로펌 및 분야별 우수 로펌/기업법무팀/deal 등을 선정하여 총 2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수상 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Firm Categories – 단독 수상

- 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 Deal Firm of the Year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 Construction Law Firm of the Year (건설 부문 올해의 로펌)
- IP Law Firm of the Year (지식재산권 부문 올해의 로펌)
- TMT Law Firm of the Year (방송·통신 부문 올해의 로펌)

Deal Categories – 공동 수상

- Korea Deal of the Year (올해의 딜)
: Initial public offering of shares issued by Hyundai Rotem on the Korean Exchange
-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Equity Market 분야 올해의 딜)
: Initial public offering of shares issued by Hyundai Rotem on the Korean Exchange
- M&A Deal of the Year (M&A 분야 올해의 딜)
: Acquisition of ING Life Insurance Korea by MBK Partners
- Real Estate Deal of the Year (Real Estate 분야 올해의 딜)
: Acquisition of Four Seasons Hotel located in Sydney, Australia by a Korean real estate fund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5)

영국제 유명 법률출판사인 Legalease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시장 평가지 'The Legal 500 Asia Pacific'의 2015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14개 분야에서 선두 로펌(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2명의 변호사들이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어 소개되었습니다.



Firm Rankings (Band 1)

- Antitrust and competition
- Banking and finance
- Capital markets
- Corporate and M&A
- Dispute resolution
- Employment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tellectual property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
- Projects and energy
- Real estate
- Shipping
- Tax
- TMT

Leading Individuals

- Banking and finance: 박수만, 허영만, 조영균
- Dispute resolution: 한상호, 윤병철, 박은영
- Capital markets: 박수만, 허영만, 조영균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 Corporate and 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5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5)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 Euromoney가 발행하는 global law firm directory 'IFLR1000' 2015년 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5개 전 업무분야의 국내 선두 로펌(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11년 연속으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으며, 10명의 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의 Leading Lawyer로, 2명의 변호사가 Rising Star로 소개되었습니다.



Firm Rankings (Tier 1)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M&A
-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허익렬, 박수만, 정진영, 박종구, 조영균, 윤희선, 고창현, 신창희

Rising Stars

김철만, 정명재

15개 분야에서 Highly Recommends 선정 - Asialaw Profiles (2015)

글로벌 금융 전문 미디어 Euromoney 계열의 법률잡지사 Asia Law & Practice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지 'Asialaw Profiles 2015'를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15개 분야에 Highly recommends, 3개 분야에서 Active practice areas로 선정되었으며, 16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Recommended individuals로 소개되었습니다.



Firm Rankings (Highly Recommends)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Antitrust
- Construction & Real Estate
- Corporate/M&A
- Dispute Resolution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T, Telco & Media
- Labour & Employment
- Private Equity
- Project Finance
- Restructuring & Insolvency
- Shipping, Maritime & Aviation
- Tax

Firm Rankings (Active Practice Areas)

- Energy & Natural Resources
-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 Investment Funds

Recommended Individuals

정계성, 정경택, 양영준, 현천욱, 백우현, 최동식, 노영재, 정진영, 안재홍, 박종구, 허영만, 고창현, 박은영, 정명재, 김진오, 이호인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4)

영국의 legal market researcher, Acritas가 발표한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Top 20)'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순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계 각국에 오피스를 두고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을 제외한 지역(local) 로펌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고,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 379명을 대상으로 로펌의 인지도, 선호도, 다국적 거래 및 소송 수행능력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로펌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4)

미국 유명 법률월간지 American Lawyer Magazine이 2014년 10월호에서 발표한 'Global 100(전세계 100대 로펌 랭킹)' 특집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lawyer 규모 기준으로 선정한 'Most Lawyers' 분야 및 office 소재 국가 개수 기준으로 선정한 'Most Global'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기준으로 선정한 'Pro Bono Commitment' 분야에서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로 랭크 되었습니다.

'Global 100'은 American Lawyer Magazine이 매년 발행하는 랭킹 특집으로,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올해 특집에서는 pro bono commitment/ most revenue/ most lawyers (full-time lawyer 규모)/ most profits per partner/ most global(most revenue 차트 and/or most lawyer 차트에 랭크된 로펌의 office 소재 국가 개수)의 기준으로 각각 전세계 1위~100위 로펌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공헌 소식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4)

영국 유수의 법률미디어 Who's Who Legal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로펌의 Pro Bono 활동에 대한 2014년 조사 결과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0대 프로보노(Pro Bono,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 선도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Who's Who Legal은 2013년부터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Who's Who Legal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대한민국 Pro Bono 법률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에 앞장서 왔다"라며,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 모든 변호사들이 수 시간의 Pro Bono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최근에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3분기 M&A 리그테이블

글로벌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2014년 3분기 누적 M&A 리그테이블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M&A 법률자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총 95건, 225억달러의 자문 실적으로 국내 법률자문 금액 및 자문건수 기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자문건수 기준으로 1위, 금액 기준으로는 9위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랭크되었습니다.

Newszine November 2014, Issue 4

金·張 法律事務所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110-72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